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22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용)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22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용)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본인의 의무사항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1. 12. 28. 기준 >



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 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 대출명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 대출한도 :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입학금+수업료 등)
- 대출기간 :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① 최대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 한함)+3년
 - ②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 차주연령≥55인 경우 최장 대출기간은 5년으로 한함
 - ③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 분할상환(원리금 등 포함)의 경우에는 납입응당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음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

- 고정금리 : 연 0%
- 지연배상금률 :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2.0%부과
- * 만기경과 : 대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 ** 기한의 이익 상실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3.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을)
-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
- ▶ ①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 ③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 ④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한 부대비용을 반환(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
- *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 바에 따름

5.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16년 대출실행분부터 부과)
- ▶ 연체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대출의 만기일(상환기간 종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 ▶ 지연배상금 : 대출원금*지연배상금률*연체일수/365(366)

6. 용자 제한 대상자

- 용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학자금용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
-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약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 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및 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기 용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단, 상환해야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변조 시 다음과 같이 제제 조치 가능
 - * 부당수혜 1회 : 발견일 이후 다음 2개 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2)
 - * 부당수혜 2회 : 발견일 이후 전체학기 신청 자격 제한

7. 상환방법

- 자동이체 :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 후 신청 가능
- 제3자 자동이체
 - ▶ 제3자의 자동이체계좌 변경 신청 및 차주의 동의 확인 후 제3자명의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 가능
- 일회성 가상계좌
 - ▶ 재단 홈페이지에서 생성 후 이용 가능
 - * 대출상환거래 가능시간 : 평일 09시~19시
 -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상환거래 불가

8. 조건변경

- 대출기간 변경: 계좌별 1회
 - ▶ 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 또는 단축
 - * 거치기간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 불가
 - ▶ 학생 신청 → 재단 승인 → 학생 약정

9. 상환 유예

- 채무자가 연장사유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 재단은 신청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후 승인
 - ▶ 연장사유 발생일자 기준 연체가 아닐 경우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연장사유 : 출산, 사고 및 질병, 장애, 재난/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학생창업자,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부모의 중증질병, 특례조치 등

10. 채무면제

- 사망
 -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행정안전부 거주 정보 확인 자료를 근거로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 ▶ 재단이 채무면제 등을 결정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판결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장애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기초생활수급자)되는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 ▶ 단, 대출을 받을 당시 해당 사유자일 경우 면제 불가

11. 유의사항

- 연체 시 불이익
 - ①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생
 - ②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 조치(가압류 등) 발생 될 수 있음
-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 ▶ 학자금융자 실행 후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 대출사실에 관한 통지
 -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의 부모님께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음

1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신청·지급·상환 문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 농촌학자금대출 정상채권 파트)
☎ 1599-2270, 1번)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상환·신용회복(채무조정) 문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 농촌학자금대출 부실채권 파트)
☎ 1599-2270, 2번)